#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성폭력방지법)



[시행 2025. 4. 17.] [법률 제20461호, 2024. 10. 16., 일부개정]

여성가족부 (성폭력방지과) 02-2100-6392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2. 3.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성폭력"이란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성폭력행위자"란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.
- 3. "성폭력피해자"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0. 16.>

- 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
- 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, 교육 및 홍보
- 3. 피해자를 보호・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・운영
- 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
- 5. 피해자에 대한 보호・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・운영
- 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- 7.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
- 8.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・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성폭력 실태조사)**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"국가기관등의 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・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5. 29., 2021. 1. 12.>
  - 12. 18., 2016. 5. 29., 2021. 1. 12.>
 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<신설 2014. 1. 21., 2014. 5. 28.>
  -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, 전보,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<신설 2021. 1. 12.>
  - ④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2. 3., 2021. 1. 12.>
  -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8. 4. 17., 2021. 1. 12.>

-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・보급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 12. 18., 2013. 3. 23., 2014. 1. 21., 2015. 2. 3., 2015. 12. 1., 2021. 1. 12.>
-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1. 21., 2015. 2. 3., 2016. 5. 29., 2021. 1. 12.>
-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1. 21,, 2015. 2. 3,, 2021. 1. 12.>
-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구할수 있다.<신설 2014. 1. 21, 2015. 2. 3, 2021. 1. 12.>
- 1.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・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
- 4.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
- 5. 「고등교육법」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인증
-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신설 2014. 1. 21,, 2015. 2. 3,, 2021. 1. 12.>
-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5. 29., 2018. 4. 17., 2021. 1. 12.>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2. 12. 18., 2014. 1. 21., 2015. 2. 3., 2016. 5. 29., 2021. 1. 12.> [제목개정 2016. 5. 29.]
- 제5조의2(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(이하 "지원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17.>
  -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12. 18.]

12. 1., 2018. 4. 17.>

- 제5조의3(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,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「방송법」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「방송법」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(이하 "방송사업자"라 한다)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12. 18.]

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 <개정 2023, 4, 18.>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1. 1. 12.]
- 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 <개정 2023, 4, 18,>
  -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신설 2025. 4. 22.>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,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신설 2025. 4. 22.>
  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개정 2025. 4. 22.>
  - ⑤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5. 4. 22.>

[본조신설 2021. 1. 12.]

[시행일: 2025. 10. 23.] 제5조의4

- **제6조(성폭력 추방 주간)**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.
- 제7조(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 "이라 한다)이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(입학, 재입학,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, 1, 29.>
  - 1.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    - 가.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.
    - 나.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(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)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,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.
  - 2.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: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 ·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,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 ·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 ·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.<신설 2011. 3. 30.>
-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1. 3. 30.>

[제목개정 2011. 3. 30.]

- **제7조의2(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)**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(訴訟代理) 등의 지원(이하 "법률 상담등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「법률구조법」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 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2. 1.]

- 제7조의3(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(이하 "불법촬영물등"이라 한다)이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유포되어 피해(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)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(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, 성명, 나이, 직업, 학교, 용모,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. 29,, 2021. 1. 12,, 2024. 10. 16.>
  -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
  - 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
  - 3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성착취물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,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(이하 이 조에서 "삭제지원요청자"라 한다)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 1. 29., 2021. 1. 12., 2024. 10. 16.>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 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.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1. 12., 2024. 10. 16.>
  - 1.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
  - 2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
  -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·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.<개정 2020. 1. 29., 2021. 1. 12., 2024. 10. 16.>
 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(求償權)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20. 1. 29., 2021. 1. 12., 2024. 10. 16.>
  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신설 2024. 10. 16.>
  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, 제3항,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24. 10. 16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・방법,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・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・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1. 29., 2021. 1. 12., 2024. 10. 16.>

[본조신설 2018. 3. 13.] [제목개정 2020. 1. 29.]

- 제7조의4(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·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.
  -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・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・신상정보 삭제지원
  - 2. 불법촬영물등・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・홍보
  - 3. 불법촬영물등・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・컨설팅
  - 4. 불법촬영물등・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・교류
  - 5.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・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・운영
  - 6.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
  - 7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
  - ③ 시·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 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.
  - 1.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・상담 및 사후관리
  - 2. 불법촬영물등・신상정보 삭제지원
  - 3. 불법촬영물등・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・홍보
  - 4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・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
  - ④ 시·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(이하 "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"이라 한다)의 설치 ·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0. 16.]

- 제8조(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)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10. 20., 2021. 1. 12.>
  - 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
  - 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
  - 3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 - 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  - 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  - 6.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  - 7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  - 8.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

[제목개정 2020. 10. 20., 2021. 1. 12.]

- 제9조(신고의무) ①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미성년자가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3조부터 제9조까지,「형법」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12., 2024. 3. 26.>
  - 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·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1. 12.>
  -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제1항
  - 2.「형법」제303조제1항

# 제2장 피해자 보호 • 지원 시설 등의 설치 • 운영

- 제10조(상담소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(이하 "상담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수 있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2. 12. 18., 2018. 3. 13.>
  - 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)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.<신설 2018. 3. 13.>
  - ④ 상담소의 설치·운영 기준,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3. 13.>

## 제11조(상담소의 업무)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 <개정 2011. 3. 30.>

- 1.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
- 2.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
- 3.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
- 4.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 등에의 동행
- 5.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「법률구조법」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 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
- 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
- 7.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
- 제12조(보호시설의 설치・운영 및 종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>
  - ②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2. 12. 18.>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12. 12. 18., 2015. 2. 3.>
  - 1. 일반보호시설: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  - 2. 장애인보호시설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 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  - 3. 특별지원 보호시설: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  - 4. 외국인보호시설: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. 다만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.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- 6.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15. 12. 1.>
- ⑤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,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2. 12. 18., 2015. 12. 1.>

[제목개정 2012. 12. 18.]

제13조(보호시설의 업무 등)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 <개정 2011. 3. 30.>

- 1.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
- 2.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- 3. 자립·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
- 4. 제11조제3호 ·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
- 5.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
- 6.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·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<개정 2012. 12. 18., 2015. 2. 3.>
- **제14조(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하지 아니한다.
  - 1. 생계비
  - 2. 아동교육지원비
  - 3. 아동양육비
 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보호시설의 입소)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.

- 1.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- 2.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-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12. 18.>
-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2. 12. 18.>
-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12. 18.>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6조(보호시설의 입소기간)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

- 1, 21,, 2015, 2, 3,>
- 1. 일반보호시설: 1년 이내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- 2. 장애인보호시설: 2년 이내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3. 특별지원 보호시설: 19세가 될 때까지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- 4. 외국인보호시설: 1년 이내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5.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2년 이내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
- 6.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2년 이내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 장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, 12, 18.]

- **제17조(보호시설의 퇴소)**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.
  -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.
  - 1.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
  - 2.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
  - 3.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
  - 4.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
- 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, 치료,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, 수사지원,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이하 "통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1.>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,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,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4. 1. 21., 2017.
  - 12. 12., 2023. 4. 11., 2024. 10. 16.>
  - 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2. 삭제 < 2015. 2. 3.>
 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  - 3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4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 또는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・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24, 10, 16.>
- 제19조의2(상담원 교육훈련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)는 상담원(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)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・훈련을 담당하는 시설(이하 "교육훈련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·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18. 4. 17.>
  -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5. 2. 3., 2018. 3. 13.>
  - 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설립・운영하는 학교법인
  - 2. 법률구조법인
  - 3. 사회복지법인
  - 4.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  - ④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)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.<신설 2018. 3. 13.>
  -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,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,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3. 13.>

[본조신설 2012. 12. 18.]

- 제20조(보수교육의 실시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등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(補修)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24. 10. 16.>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**제21조(폐지・휴지 등의 신고)** ①제10조제2항,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(休止) 또는 재개(再開)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3. 2.>
 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3. 13.>
  - ③ 상담소의 장,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3. 2., 2018. 3. 13.>
  - ④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3. 2., 2018. 3. 13.>
- 제22조(시정 명령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수 있다. <신설 2023. 4. 18.>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2. 12. 18., 2015. 2. 3., 2015. 12. 1., 2016. 3. 2., 2018. 3. 13., 2023. 4. 18.>
- 1.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・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2.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3.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·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
- 4.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
- 제23조(인가의 취소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 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23. 4. 18.>
  - 1.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
  - 2.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하 거나 기피한 경우
  - ②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3. 2.>
  -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·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6. 3. 2.>
- 제24조(피해자등의 의사 존중)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,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24, 10, 16.>
- 제25조(상담소·보호시설·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·보호시설·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,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0. 16.>
 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[제목개정 2024. 10. 16.]
- 제26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등의 설치·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0. 16.>
  -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립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30,, 2012. 12. 18.>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·가족·친지나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3. 30., 2024. 10. 16.>
  - 1. 보건 상담 및 지도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치료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·정신적 치료
- ③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2. 3.>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
- 3.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④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2. 3.>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, 절차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5. 2. 3.>
- **제28조(의료비 지원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영리목적 운영의 금지)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2, 12, 18.>
- 제30조(비밀 엄수의 의무)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 10. 16.>

# 제3장 보칙

- 제31조(경찰관서의 협조)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(지구대·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1. 3. 30., 2024. 10. 16.>
- 제31조의2(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)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출입,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 -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·신고자·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, 중앙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# 2012. 12. 18., 2015. 12. 1., 2024. 10. 16.>

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,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한다.
- 제33조(유사명칭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상담소, 보호시설, 통합지원센터,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,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,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,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24. 10. 16.> [전문개정 2012. 12. 18.]
- 제34조(청문)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- **제35조(권한의 위임)**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벌칙

- **제36조(벌칙)**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12. 2. 1., 2020. 10. 20., 2021. 1. 12.>
  -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12. 2. 1., 2012. 12. 18., 2018. 3. 13.>
  - 1. 제10조제2항 전단,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·운영한 자
  - 2.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,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유영한 자
  - 3.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
  - 4.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
- 제37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**제38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7. 3. 21, 2023. 4. 18.>
  - 1.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  - 2.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17. 3. 21., 2021. 1. 12.>
  - 1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
  - 3.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<개정 2012. 12. 18., 2015. 12. 1., 2017. 3. 21.>

부칙 <제20461호,2024. 10. 16.>

- **제1조**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6조의 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.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